

#### [서식 예] 채권가압류신청서(임금청구채권으로 공매절차에서 배분받을 배분금)

# 채 권 가 압 류 신 청

채 권 자 〇〇〇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 무 자 ㅇㅇㅇ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제3채무자 한국자산관리공사1)(소관:)

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3층, 40~47층

대표자 사장 〇〇〇

전화 ·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청구채권의 표시** : 금 10.000.000원 (임금 등)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 신 청 취 지

-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의 채권을 가압류한다.
-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sup>1)</sup>배분기일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등 배분금이 이관된 경우에는 자산관리공사가 아닌 배분금이 이관된 기관에 하셔야 합니다.



## 신 청 원 인

- 1. 채권자는 OO 소재 채무자 사업장에서 2010. 5. 1.부터 2017. 10. 31.까지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그 기간 동안의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행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에 기재된 임금 등 합계 금 10,000,00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2. 한편, 채무자는 별도의 재산이 없고 현재 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하는 공매절 차에서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배분금 채권이 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 게 위 체불금품을 청구하는 본안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위 소송이 확정되 기까지는 많은 시일이 걸리므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가압류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그동안 별지목록 기재 채권을 처분할 가 능성이 있으므로 그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본 가압류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 3. 이상과 같은 이유로 채권자는 본 가압류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다만 담보제공은 정당한 근로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채권자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시어 무공탁 또는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각 1통1. 법인등기사항증명서2통1.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채무자 주소지 토지 및 건물)1통1. 송달료납부서1통1. 가압류신청 진술서1통1.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1통

2000. 0. 0.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 ㅇㅇ지방법원 귀중



[별 지]

# 목 록(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청구채권의 표시** : 금 10,000,000원 (임금 등)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관리번호: OO 세무서 2017-OOOOO-001, 매각재산: 전남 화순 전 571㎡) 부동산공매사건에 대한 매각대금 중 배분절차에 의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교부받을 배분금(잉여금) 청구채권 중 위 청구채권 금액에 이르기까지 금액. 끝.



[별 지 2]

## 가압류신청 진술서

채권자는 가압류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 사실을 진술합니다. 다음의 진술과 관련하여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보정명령 없이 신청이 기각되거나 가압류이의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 , , , , , , , , , , , , , , , , , ,	
20 (날인 또는 서명)	
#####################################	

◇ 다음 ◇

## 1. 피보전권리(청구채권)와 관련하여

|--|

여

\*

□ 아니오 → 채무자 주장의 요지 :

□ 기타:

- 나. 채무자의 의사를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확인하였습니까? (소명자료 첨부)
- 다. 채권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금액은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적 정하게 산출된 것입니까? (과도한 가압류로 인해 채무자가 손해를 입으면 배상하 여야 함)

□ 예 □ 아니오

#### 2. 보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 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하지 않으면 향후 강제집행이 불가능하 거나 매우 곤란해질 사유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 나.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과 관련하여 공정증서 또는 제소전화해조서가 있습니까?
- 다.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과 관련하여 취득한 담보가 있습니까? 있다면 이 사건 가압류를 신청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라. [채무자가 (연대)보증인인 경우] 채권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어떠한 보전조치를 취하였습니까?
- 마. [다수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인 경우] 각 부동산의 가액은 얼마입니까? (소명자료 첨부)
- 바. [유체동산 또는 채권 가압류신청인 경우] 채무자에게는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습니까?
  - □ 예 □ 아니오 → 채무자의 주소지 소재 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 사. ["예"로 대답한 경우]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이 아닌 유체동산 또는 채권 가압류신청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이미 부동산상의 선순위 담보 등이 부동산가액을 초과함 → 부동산등기부등 본 및 가액소명자료 첨부
  - □ 기타 사유 → 내용:
- 아. [유체동산가압류 신청인 경우]
  - ① 가압류할 유체동산의 품목, 가액은?
  - ②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보전조치를 취하였습니까? 그 결과는?



#### 3. 본안소송과 관련하여

가.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한 사	실이 있습	니까?					

□ 예 □ 아니오

- 나. ["예"로 대답한 경우]
  - ①본안소송을 제기한 법원·사건번호·사건명은?
  - ②현재 진행상황 또는 소송결과는?
- 다. ["아니오"로 대답한 경우] 채권자는 본안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까?
  - □ 예 → 본안소송 제기 예정일:
  - □ 아니오 → 사유:

### 4. 중복가압류와 관련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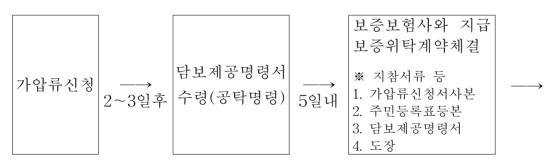
- 가.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금액 불문)을 원인으로, 이 신청 외에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가압류를 신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과거 및 현재 포함)
  - □ 예 □ 아니오
- 나. ["예"로 대답한 경우]
  - ①가압류를 신청한 법원·사건번호·사건명은?
  - ②현재 진행상황 또는 결과(취하/각하/인용/기각 등)는? (소명자료 첨부)
- 다. [다른 가압류가 인용된 경우] 추가로 이 사건 가압류를 신청하는 이유는 무엇입 니까? (소명자료 첨부)

제출법원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							
	신청서 1부(당사자목록, 청구채권목록, 가							
제출부수	압류채권목록 각 5부정도 첨부) 관 련 법 규 제278조, 제246조							
	(채권자)							
	· 가압류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민							
	사집행법 제281조 제2항)							
	·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의 불변기간( 민사소송법 제444조)							
	(채무자)							
  불복절차								
및 기간	명령(민사집행법 제287조)							
	·이의신청의 시기에 관하여는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가압류결정							
	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 · 변경을 구할 실익이 있는 한 언제든							
	지 할 수 있음. 가압류명령이 발령되어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							
	하고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이상 채무자는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							
ul Ó	·인지액: ○○○윈(☞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비 용	·송달료 : ㅇㅇㅇ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 민사집행절차나 국세 등의 체납처분절차에 의하여 행하는 지분의							
	압류 또는 가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33조의 규정에 의한 지시채권의							
	압류 또는 가압류의 방법에 의함(건설산업기본법 제59조 제4항).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75조 (배분대행의 관리)							
	국세징수법 세무서장(부과과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배분하지 못한 금액을 지정한 금융기관계좌(부과과 체납정리							
	계좌)로 송금 받아 정부보관금 처리화면에서 보관자, 수령권리자 등							
	세부 보관내역을 입력하고,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관 의뢰하면 운영지원							
기 타	과장(업무지원팀장)은 「정부보관금취급규칙」에 따라 별단예금 등에							
	즉시 예입하여야 한다.							
	1. 배분에 대한 이의가 있어 배분이 유보된 금액							
	2. 배분기일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채권자 또는 체납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배분금							
	3.매각취소 또는 매각불허 결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매수자 또는							
	체납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계약(입찰)보증금							
	• 한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의하면, 체납자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이의신청 등이 있는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대행이 즉시 중							
L								



지되고(제170조제1항).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세징수법 제8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매각대금의 배분을 대행하는 과정에서 배분이의로 배분 하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이를 송금받아 그 권리자가 최종 확정된 후에 직접 지급한다(제175조 제5항,제6항). 위와 같은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을 대행하여 공매절차를 처리하는 법인 일 뿐 공매절차에 따른 매각대금의 귀속주체는 아니라 할 것이고. 설 령 견해를 달리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각대금의 배분을 대행함을 전제로 그 한도에서 잠정적으로 그 귀속주체가 된다고 보더라도. 배분 이의로 배분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더 이상 피고의 배분 대행이 허용되지 않는 등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아무런 권한이 인정되지 않 는 이상,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위와 같이 배분이의로 이미 OO세무서장 에게 인계된 박CC에 대한 배분금 상당 금액의 권리주체로 보기 어렵 다. 결국, 이 사건 소는 권리주체가 아니어서 당사자소송에서의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서울행정법원 2016. 5. 19. 선고 2016구합54480 판결 [기타(일반행정)]).

#### ※ 집행절차



보험증권을 법원신청과에 제출 (보험증권앞면 사본 수통을 함께 제출)

- ※ 가압류 사건에서 선담보제공 방식도입(부동산·자동차·채권에 한함)
  - 1. 부동산, 자동차, 채권에 대한 가압류 사건은 채권자가 가압류신청시에 법원의 담보제공명령 없이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미리 공탁보증보험증권(보증서)



을 발급받아 보증서 원본을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함

★ 가처분 사건과 유체동산 가압류 사건은 제외

#### 2. 보증금액

○부동산, 자동차 : 청구채권액(원금)의 1/10(100원미만 버림)

○채권: 청구채권액(원금)의 1/5(100원미만 버림)

3. 가압류신청서상에 담보제공은 증권제출 허가신청 의사표시를 기재하여야 함예) 담보제공은 공탁보증보험증권(○○보험증권회사 증권번호 제○○○ - ○○○ - ○○○호)을 제출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가압류신청사건에 대한 담보기준(2003. 10. 20.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

구 분	부 동 산	채 권	유 체 동 산
담보제공액	청구금액의 1/10 <sup>1)</sup>	청구금액의 2/5 <sup>2)</sup>	청구금액의 4/5 <sup>3)</sup>
담보제공 방법	현금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 <sup>4)</sup>	○현금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 <sup>4)</sup> ○다만, 임금, 영업자 예 금의 경우에는 반드시 담보제공액의 1/2 범위 내의 현금공탁 (즉, 청구 금액의 1/5 범위 내의 현금 공탁과 나머지 담보제공액에 관한 보증보험증권) <sup>5)</sup>	구금액의 2/5) 범위 내의 현금공탁과 나머 지 담보제공액에 관한
채권자별 구분 <sup>6)</sup>	없음	없음	없음
선담보 <sup>7)</sup>	가능	가능 (임금, 영업자 예금 제외)	불가능
기타 <sup>8)</sup>	소명 정도에 따라 담 보제공액 중 일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 금공탁만을 허용	재원에 내하여노 소병 성	

## 1) 변동 없음



- 2) 담보제공액 100% 증액(1/5 → 2/5)
- 3) 담보제공액 140% 증액(1/3 → 4/5)
- 4) 원칙적으로 현금공탁을 할 것인지 보증보험증권으로 할 것인지의 선택을 채권자에게 맡김
- 5) 유체동산, 임금, 영업자 예금의 경우 담보제공액의 일정한 비율에 대하여는 현금공 탁만을 담보로 인정함
- 6) 공공기관, 금융기관, 개인 구분을 없앰.

  다만,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담보제공 방법을 찾을 때까지 현행과 같이
  무공탁
- 7) 임금, 영업자 예금, 유체동산을 제외하고는 현행과 같이 선담보제공 허용
- 8) 부동산가압류, 임금 및 영업자 예금을 제외한 채권가압류에 대하여는 피보전권리 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 정도에 따라 담보제공액 중 일정한 부분에 대하여 는 담보로 현금공탁만을 허용

#### ※ 가압류신청 진술서의 제출

새로 제정된 보전처분신청사건의사무처리요령(대법원재판예규 재민 2003-4)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03. 11. 1.부터 가압류를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신청사건 기록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첨부하지 않거나, 고의로 진술 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정명령 없이 기각될 수 있음

●●●분류표시 : 민사집행 >> 가압류, 가처분